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26
----------	------

2017년 09월 0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가.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광역학교급식지원 센터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농수산식품공사”라 한다)에 민간위탁(신규)으로 운영하고자 함.

-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 전체(관계 법령 참조)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18. 1. 1.~2020.12.31.)
- 위탁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2014, 교육부)
- 위탁의 필요성
 - 친환경유통센터는 농수산물공사에서 2010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항(제8조의3 제3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반영 예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에서 2010년부터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에 식재료 공급 사무 수행)를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에서 2010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제8조의3제3항1)에 명시된 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운영, 공급·배송 업체의 선정·평가·관리, 식재료의 안정성·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센터 현황>

- 농수산식품공사 소유, 서울시 150억원 출자

<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현황 >

구 분	강서 1센터	강서 2센터	가락 센터
위 치	강서시장 내		가락시장 내
완 공 일	2010년 2월	2011년 5월	2014년 8월
공 사 비	96억원(공사 자부담)	76억원(시비50억, 공사26억)	147억원(시비 100억, 공사47억)
건축면적	6,120㎡(지하1층/지상2층)	3,366㎡(지하1층/지상1층)	5,666㎡(지상 3층)
적정처리	300개 학교	400개 학교	600개 학교

-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2018.1.1 ~2020. 12.31)으로 조례에 따라 협약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계획에 있음.

1)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각호 생략)

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 위탁 개요 >

가.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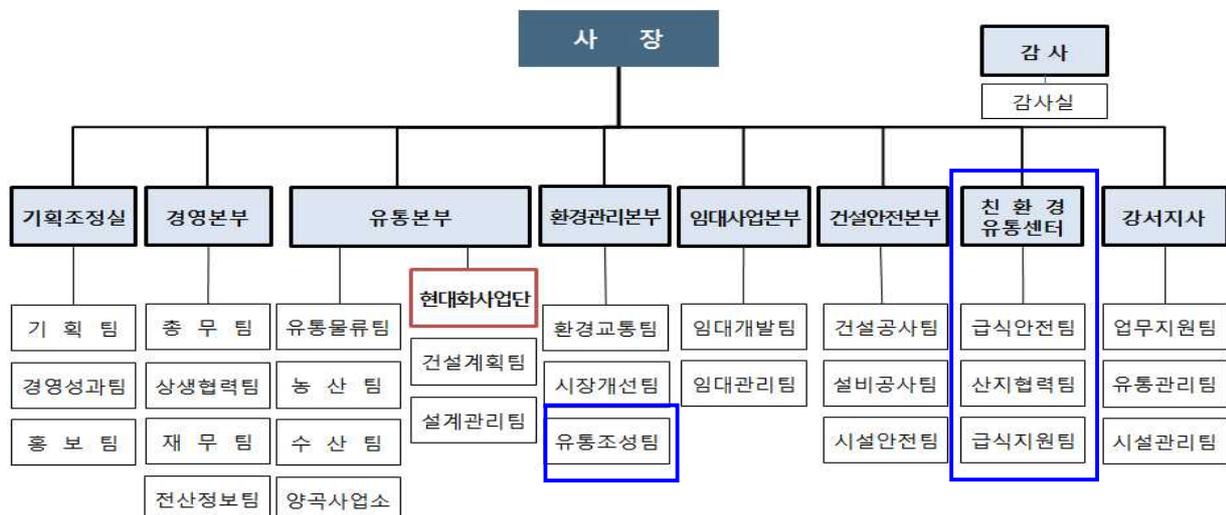
나.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제2항

1.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2.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3. 공급·배송업체별 학교 배정 및 조정, 공급권역 배분 등의 관리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5.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6.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9.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를 결정 및 관리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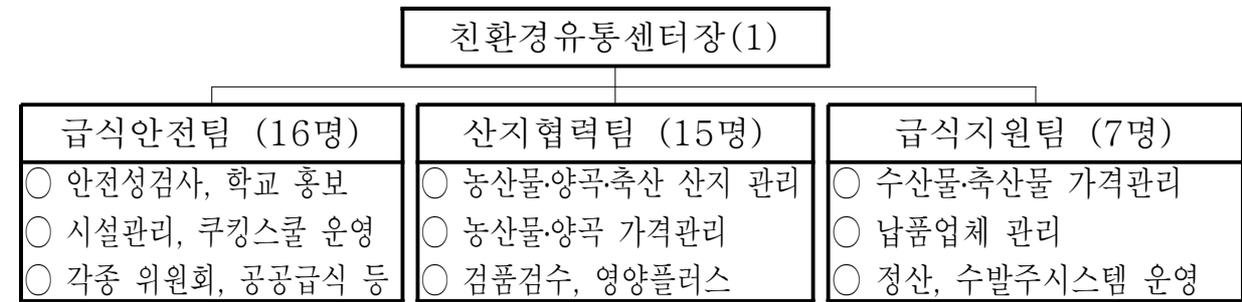
다.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18. 1. 1.~2020.12.3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현황>

1. 명 칭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3. 설립목적 : 농수산물식품의 유통, 적정 가격 유지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4. 주요사업 : 거래질서 확립, 유통중사자 지도·감독, 유통구조 개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등
5. 수탁조직 :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1단 27팀



6.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7. 재무현황(2016년)

- 가. 재산현황 : 1조 1,516억 1천 2백만원
- 나. 부채현황 : 1,897억 4천만원
- 다. 수입현황 : 687억 1백만원

나. 위탁의 경위 및 배경

○ 2014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의 개정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나, 서울시와 공사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공사에서 운영해오던 중 2016년도 공사 손익이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 운영 위수탁 문제가 대두되어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음.

※ 시장 방침(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 '08. 3월)에 따라 농수산식품공사에서 '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

※ 2011년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센터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14년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해 왔음.

< 친환경유통센터의 연도별 손익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총 수 익	총 비 용	영업 이익	누적손익
2011년	3,588,674	3,070,055	518,619	518,619
2012년	5,658,154	4,354,721	1,303,432	1,822,051
2013년	5,849,984	4,701,451	1,148,533	2,970,584
2014년	1,572,605	4,457,266	△2,884,661	85,923
2015년	2,588,155	5,504,348	△2,916,193	-2,830,270
2016년	3,017,830	4,779,965	△1,762,135	-4,592,405

※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은 201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7년2월 공사의 재정건정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었음.

※ 적자발생 사유

1. 감사원의 수수료 관련 지적 후 사용료율 인하

▸ 2011년 4% → 2012년 3.2% → 2014.4월 2.1%

▸ 2013.8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의 감사 청구(친환경급식센터의 순이익 과다 등)

2.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의 변경 및 2014년 농약검출 파동으로 이용학교수 급감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6월
784개교		867개교		358개교		723개교		784개교		820개교

3. 안전성 검사비용 증가(2015년 이후 정밀검사법 년 농약검출 이후 정밀검사 실시)

구 분	검 사 건 수(건)			검사비용 (천원)
	합 계	속성검사	정밀검사	
2014년	23,645	11,462	12,183	862,114
2015년	22,026	0	22,026	1,290,704
2016년	24,442	0	24,442	1,715,000

다.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성 검사 및 유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식재료의 안전성 검증 능력 및 유통체계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운영재원 단독부담으로 발생한 적자 해소를 이유로 공사와의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함께 운영 및 사무주체에 대한 조례간 상충성 여부, 서울시 투자기관인 공사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적자보전을 이유로 한 위탁규모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① 조례상 상충성으로 인한 운영 및 사무 주체의 불명확성

- 공사가 그동안 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로 흑자 운영해오다가, 감사원 지적 사항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 및 안전성 검사 비용증가 등으로 2014년부터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제8조의3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해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제2조제8호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또한 공사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장을 설치·운영 주체로 한 같은 조례 제8조의3과 상충성 소지가 있어 설립·운영 및 사무주체에 따른 위탁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8.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각호 생략)

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위탁한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6.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식품의 유통
- 7. 농수산물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주체

- 연혁적 측면 : 「농수산물공사 조례」는 2012년 10월 가격안정의 기능에서 학교급식관련 사업을 포함한 유통·안전·품질관리 등으로 기능을 확대²⁾하도록 개정되었고,

2)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2012.1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는 2014년 1월 광역센터와 유통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³⁾하고자 제8조의3를 신설하여 공사가 운영 중이던 친환경유통센터를 시의 사무로 규정한 바 있음.

- ‘실제적 사업주체’라는 측면 :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는 서울시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에서 건립·소유·운영하고, 서울시는 건립비에 대해서 출자금 형식으로 보조하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조한 바 없음.

※ 2010년~현재까지 출자금 형식으로 보조하였고, 공사 고유업무 인정한 것이 보임.

○ 평생교육국은 서울시가 본 사무의 주체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법과 조례 이외에 ‘학교급식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⁴⁾’을 제출하였으나, 「학교급식법」⁵⁾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주체에서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있는바, 업무편람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 한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⁶⁾에서는 법령·조례·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사무가 아니고, 공사의 고유사무라는 판단을 한다면, 민간위탁이 아닌 출연금 사업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2013.12.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학교급식지원 가이드라인 - 교육부, 2014년, 업무편람.(10p 발췌) :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봄.

5)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주체에서 서울시장이 삭제된 이유는 교육부의 학교급식 기본정책(기초지자체 내의 지역농산물 우선 소비)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의 주체에서 제외함.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가이드라인 내용은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닌 “설치할 수 있다고 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② 서울시 투자기관인 공사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본 위탁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7)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8))과는 그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바, 본 위탁동의안이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위탁 유형

- ① 관할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규정
- ②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규정
-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지방자치법 제151조제1항)
 - 별도의 입법방식은 없으며, 상호 협의를 통한 규약을 정하여 위탁

< 위임·위탁·민간위탁·대행 비교 >

구분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권한이양	책임과 권한이전	책임과 권한이전	책임과 권한이전	권한이전 없음
대상	하부기관	동급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 공공단체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개인·단체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개인·단체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제15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개별법령 및 자치법규 필요

7)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8)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금 예산규모 누락 및 적자보전을 이유로 한 위탁의 타당성

- 본 동의안에는 위탁할 사무의 범위⁹⁾는 명시되어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금의 규모는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그 사유는 위탁금 책정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의 위탁금 미확정 사유 : 책정방식 미확정

- 각 주체별 민간위탁금 산정방식

- 평생교육국 :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적자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사업비 전체를 민간위탁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요구
- 농수산식품공사 : 사업비전체 + 부가세 포함

- 위탁금 책정방식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수료(안전검사 비용)를 어느 기관의 세입으로 계상할 것인지에 따라, 공사의 세입으로 계상하고 서울시에서 공사의 적자를 보존하는 방식과, 서울시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전체 운영비를 위탁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민간위탁금액의 확정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위탁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본 동의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종합 결론

- 결론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공사의 고유사무로 할 것인지, 고유사무에서 제외하고 시의 사무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센터 운영 사무가 관련법령(「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취지대로 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업인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한 후, 적정한 위탁규모 산출 및 세입처리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9)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제2항

- 아울러 2014년 조례개정 당시 공사가 수행하던 고유사무를 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이를 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실제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입법화되어 있는바, 동 조례를 실제 운영방식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조례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광역학교급식지원 센터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가 운영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이하 “농수산물식품공사”라 한다)에 민간위탁(신규)으로 운영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 나.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 전체(관계 법령 참조)

다.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18. 1. 1.~2020.12.31.)

라. 위탁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2014, 교육부)

마. 위탁의 필요성

- 친환경유통센터는 농수산물공사에서 2010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항(제8조의3 제3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 ① 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친환경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2.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3. 공급·배송업체별 학교 배정 및 조정, 공급권역 배분 등의 관리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5. 납품 농·수·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6. 우수 농·수·축산물 산지 개발 및 관리
 7. 부적합 급식재료 출하자 및 유통업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9. 학교급식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0.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료를 결정 및 관리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위탁한다.

◦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 (2014, 교육부)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봄.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반영 예정

- 예산액 : 위탁금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중(2018년도 예산심의시 심의후 확정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관리팀 박진희(☎2133-4151)